

제VI편 차별금지 보장

델라웨어 항만관리청(이하 "수령자")은 미국 운송부(U. 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로부터 연방운수자동차안전국 (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FMCSA**)을 통해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서 아래의 사항의 적용을 받고 이를 준수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법률적 근거

- 시민권법(1964) 제VI편(42 U.S.C. § 2000d *et seq.*, 78 stat. 252), (인종, 피부색, 국적에 근거한 차별 금지)
- 연방 지원 고속도로법(1973) (23 U.S.C. § 324 *et seq.*) (성별에 근거한 차별 금지)
- 개정 교육법(1972) 제IX편 (수시 개정내용 포함, 20 U.S.C. 1681 *et seq.*), (교육 과정 및 활동에 있어서 성별에 근거한 차별 금지)
- 재활법 제504조(1973), (수시 개정내용 포함, 29 U.S.C. § 794 *et seq.*), (장애에 근거한 차별 금지); 49 CFR 파트 27
- 연령 차별 금지법(1975), (수시 개정내용 포함, 42 U.S.C. § 6101 *et seq.*), (연령에 근거한 차별 금지)
- 장애인 보호법(1975), (수시 개정내용 포함, 42 U.S.C. § 12101 *et seq.*), (장애에 근거한 차별 금지)
- 49 C.F.R. 파트 21 (명칭: *운송부 연방 지원 프로그램의 차별 금지—시민권법 제VI편(1964)의 발효*)
- 49 C.F.R. 파트 27 (명칭: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및 활동의 장애에 근거한 차별 금지*)
- 49 C.F.R. 파트 28 (명칭: *운송부 주관 프로그램 및 활동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시행*)
- 49 C.F.R. 파트 37 (명칭: *장애인에 대한 수송 서비스(Transportation Service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DA)*)
- 49 C.F.R. 파트 303 (FMCSA의 제VI편/차별 금지 규정)
- 28 C.F.R. 파트 35 (명칭: *주 및 지방 정부 서비스의 장애에 근거한 차별 금지*)
- 28 C.F.R. § 50.3 (시민권법 제VI편(1964) 시행에 대한 미국 법무부 지침)

이하 위의 법률 인용문을 각각 "법률" 및 "규정"이라고 한다.

수령자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정부기관이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령자가 준수해야 하는 연방 지원 프로그램 및 활동에 관한 정부기관의 행동을 지시하는 행정 명령 및 관련 지침이 존재한다. 행정 명령 12898, 3 C.F.R. 859 (1995, 명칭: "소수민족 인구 및 저소득층 인구의 환경 정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조치")은 정부기관이 소수민족 인구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법(특히 제VI편)을 이용해 환경 정의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VI편의 특정 사항이 환경 정의에 관한 우려를 제기하며, FMSCA는 모든 수령자가 (해당 시) 기존의 절차 평가하고 개정하여 환경 정의에 관한 고려사항에 대응하고 이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수령자는 인지해야 한다. 환경 정의에 관한 더 많은 정보 및 사실을 얻고 싶다면 다음 FHWA 홈페이지를 참조한다.

<http://www.fhwa.dot.gov/environment/ejustice/facts/index.htm>.

추가적으로, 미국 법무부의 관련 정책 지침 서류(2000년 8월 16일, 65 Fed. Reg. 50123)에 따르면, 제한적 영어 능력에 관한 행정 명령 13166, 3 C.F.R. 289 (2001)은 "*제한적 영어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오직 영어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출신 국가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제VI편의 적용*"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한다. 연방 기금을 받을 경우 수령자는 출신 국가에 근거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4 가지 요인 분석(Four-Factor Analysis)을 실시해야 한다. 미국 운송부의 "*제한적 영어 능력(Limited English Proficient, LEP)을 가진 사람에 대한 수령자의 책임에 관한 정책 지침*"(2005년 12월 14일, 70 Fed. Reg. 74087 ~ 74100) 도 참고하도록 한다; 4 가지 요인 분석을 실시할 때 유용한 지침이다.

일반적 보장

법률, 규정, 다른 해당 명령, 회보, 정책, 제안서 그리고/혹은 지침에 의거하여, 수령자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즉시 취할 것임을 보장한다:

"미국 내 어떠한 사람도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나이, 장애 여부, 저소득, 제한적 영어 능력 때문에 어떠한 프로그램 및 활동(수령자가 FMCSA를 포함해 DOT로부터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프로그램 및 활동을 통해 혜택을 보는 것을 거부당하거나, 다른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VI편 및 다른 차별 금지 요구사항(연령 차별 금지법(1975), 재활법(1973) 제504조)에 관하여, 시민권복원법(1987)은 이러한 폭넓고 기관 전체의 범위에 걸친 차별 금지 법률 및 요구사항을 복원하여 조금이라도 연방 지원을 받는 수령자의 프로그램 및 활동을 그 범위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의회의 원래 의도를 분명히 했다.

특정 보장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 보장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수령자는 연방 지원 **FMCSA 프로그램**에 관하여 다음의 보장에 동의하며 보장을 제공한다.

1. 수령자는 §§ 21.23 (b) 와 C.F.R. § 21의 21.23 (e)에서 정의된 각 "활동", "시설", 혹은 "프로그램"을 ("활동"과 관련하여) 촉진하고 ("시설"과 관련하여) 운용하며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주어진 요구사항과 법률 및 규정에 준하여 시행할 것임에 동의한다.
2. 수령자는 모든 입찰 권유서, 작업 제안요청서, FMCSA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정된 법률 및 규정의 대상이 되는 자료, 그리고 기금 출처와 상관없이 협의가 이루어진 합의에 관한 제안서에 적절한 형식으로 다음의 통지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

"델라웨어 항만관리청은 시민권법(1964) 제VI편의 조항(78 Stat. 252, 42 U.S.C. §§ 2000d to 2000d-4) 및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자들은 모든 입찰자들에게 이 광고에 따라 논의하기 시작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 그들에게 초대에 응해 입찰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소유자의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나이, 장애 여부, 저소득 혹은 제한적 영어 능력(Limited English Proficient, LEP)으로 인해 낙찰 대상으로 고려할 때 차별을 받지 않음을 확실히 보장할 것임을 통지해야 한다."

3. 수령자는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계약 및 합의에 대해서 이 보장의 부록 A와 부록 E의 조항들을 삽입해야 한다.
4. 수령자가 시설 혹은 시설의 일부를 건설하기 위해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보장 범위는 전체 시설 및 그와 함께 운영되는 시설들까지 포함한다.
5. 수령자가 부동산 및 부동산의 이권을 취득하는 형태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보장 대상은 해당 자산 위 아래의 공간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된다.
6. 이 보장은 연방 재정 지원이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기간 동안 수령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단, 연방 재정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거나 동산, 부동산, 혹은 그 이권, 혹은 그 위의 구조물 및 개량물의 형태로 제공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의 보장은 수령자 혹은 모든 양수인에게 다음 중 더 긴 기간 동안 의무를 부과한다.
 - a. 연방 재정 지원 제공 목적을 위해 혹은 유사한 서비스 및 혜택 제공을 포함한 다른 목적을 위해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 b. 혹은 수령자가 자산의 소유권 및 점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7. 운송부 장관 또는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수령자, 다른 수령자, 하위 수령자, 하위 양수자, 계약자, 하청계약자, 컨설턴트, 양수인, 이권 계승자, 그리고 모든 연방 재정 지원 참여자들이 법률, 규정 및 이 보장에 의거하여 부여된 모든 요구사항들을 준수함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권한을 위임 받은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프로그램 관리 방법을 수령자가 준비해야 한다.
8. 수령자는 미국이 법률, 규정 및 이 보장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법 집행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에 동의한다.

이 보장에 서명함으로써, 델라웨어 항만관리청은 **FMCSA**의 기록, 계좌, 서류, 정보, 시설 및 직원 접근에 적용되는 모든 해당 조항들을 준수(그리고 모든 하위 수령자, 하위 양수자, 계약자, 상속자 그리고/혹은 양수인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FMCSA**에 의해 실시되는 모든 프로그램, 준수 여부 검사, 그리고/혹은 불만 사항 조사를 준수해야만 함을 인정한다. 기록 및 보고서를 보관하고, **FMCSA** 혹은 그 피지명자의 요구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기적절하게, 완전한 상태로, 적절한

방식을 통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법에 규정되었거나 프로그램 지침에 열거된 바와 같이 모든 다른 보고, 데이터 수집 및 평가 요구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델라웨어 항만관리청은 이 문서 날짜 이후로 **FMCSA**를 통해 미국 운송부가 수령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연방 보조금, 융자금, 계약, 협정, 자산, 그리고/혹은 할인, 혹은 다른 연방 원조 및 연방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그에 대한 대가로 이 보장을 제공한다. 이 보장은 델라웨어 항만관리청, 다른 수령자, 하위 수령자, 하위 양수자,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그들의 하청계약자, 양수인, 이권 계승자, 그리고 다른 모든 **FMCSA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아래에 서명인은 수령자를 대신하여 이 보장에 서명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델라웨어 항만관리청

성명 _____

(CEO *John T. Hanson*의 서명)

일시 _____

부록 A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계약자 본인, 계약자의 양수인 및 이권의 상속자(이하 "수령자")는 다음에 동의한다.

- (1) **규정 준수:** 계약자(이하 컨설턴트를 포함)는 운송부 연방운수자동차안전국 (FMCSA)의 연방 지원 프로그램의 차별 금지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 및 규정은 차후 개정될 수 있으며, 참조로 이 문서에 통합시킴으로써 본 계약의 일부가 된다.
- (2) **차별 금지:** 계약자는 계약 기간 동안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장애 여부, 소득수준, 제한적 영어 능력에 근거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재료의 조달 및 설비의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 하청계약자의 선택 및 유지에 있어서도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계약자는 계약이 49 CFR 파트 21의 부록 B에 제시된 모든 활동,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적용될 경우 부록 E에 제시된 법률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된 직간접적인 차별(금지된 고용 관행 포함)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 (3) **재료 및 설비의 조달을 포함한 하청계약의 권유:** 경쟁 입찰이건, 하청계약에 근거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자가 실시한 협상이든 간에 재료 조달 및 설비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 모든 권유에서 계약자는 각 잠재적 하청계약자 및 공급자에게 이 계약 및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연령, 장애 여부, 소득 수준 혹은 제한적 영어 능력에 근거한 차별 금지에 대한 법률과 규정에 근거한 계약자의 의무에 대해서 공지해야 한다.
- (4) **정보 및 보고서:** 계약자는 법률, 규정 및 그에 의거한 명령들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 및 보고서를 제해야 하며 DRPA 혹은 FMCSA가 위에서 언급한 법률, 규정, 지시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해 확인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 있을 경우 계약자의 서적, 기록, 계좌, 기타 출처의 정보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가해야 한다. 계약자가 요구받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실패했거나

정보가 제공을 거부하는 제3자의 독점적 소유권 하에 있을 시,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는 DRPA 혹은 FMCSA에게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시해야 한다.

- (5) **미준수 시 제재:** 계약자가 본 계약의 차별 금지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DRPA는 계약 내용 그대로 제재를 가하거나, FMCSA가 적절한 제재를 가할 것이며 제재 내용은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 계약자가 계약을 준수할 때까지 계약에 따른 지불 보류, 그리고/혹은

(b)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무효화, 해지, 혹은 효력 정지.

- (6) **조항의 포함:** 계약자는 법률, 규정 및 그에 의거한 명령이 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료의 조달 및 설비의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 모든 하청계약에 조항의 1~6 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계약자는 델라웨어 항만관리청 혹은 FMCSA가 계약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가하는 제재를 포함한 조항들을 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시하는 경우 모든 하청계약 및 조달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한 지시의 결과로 계약자가 하청계약자 혹은 공급자에게 소송을 당할 위험에 처해있거나 소송을 당했다면, 계약자는 DRPA에게 DRPA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해당 소송에 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계약자는 미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해당 소송에 관여하도록 미국에 요구할 수 있다.

부록 B

해당 없음

미국 자산 양도 증서에 관한 조항

부동산 또는 그 위의 구조물이나 개량물의 양도를 발효하거나 기록하는 증서, 혹은 보장 4 조항에 따라 미국이 해당 이권을 제공하는 증서에는 다음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따라서 1964년 시민권법 제VI편(78 Stat. 252; 42 U.S.C. § 2000d ~ 2000d-4) 조항의 발효와 관련된 운송부 연방규정 제49편, 서브타이틀 A, 장관실, 파트 21(Title 49, Code of Federal Regulation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Subtitle A, Office of the Secretary, Part 21), 운송부 연방지원 프로그램의 차별 금지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요건에 근거하여 (**해당 법적 근거의 명칭**), **연방운수자동차안전국(FMCSA)** 프로그램의 규정 및 운송부 FMCSA가 규정하는 모든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법률의 승인을 받고 (**수령자 직위**)이(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수용하고 그 위에 건축한 프로젝트를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미국 운송부는 본 문서의 일부인 별첨 "A"에 명시된 토지에 대한 운송부의 모든 권리, 권한 및 이권을 (수령자 직위)에게 을 양도, 양여, 전달한다.

(물권 표시 조항)

이는 연방 재정 지원에 해당되는 목적으로 또는 유사한 서비스나 혜택의 제공 목적으로 부동산 또는 구조물을 사용하는 동안 계속 유효하고 (**수령자 직위**) 및 그 승계인 및 양수인에게 구속력을 갖는 아래에 명시된 약정, 조건, 제한 및 유보사항의 적용을 전제로 (**수령자 직위**) 및 승계인이 해당 토지 및 그에 대한 이권을 계속 **보유하고 유지**하기 위함이다.

(**수령자 직위**)은(는) 해당 토지 및 그에 대한 이권 양도의 대가로서 토지에 수반되는 약정으로 자신과 승계인 및 양수인을 위해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동의한다: (1) 어느 누구도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근거로 양도 자산 위 아래에 있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이용을 거절 당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달리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 [그리고]* (2) (**수령자 직위**)은(는) 미국 운송부 연방규정 제49편, 서브타이틀 A, 장관실, 파트 21(Title 49, Code of

Federal Regulation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Subtitle A, Office of the Secretary, Part 21), 운송부 연방지원 프로그램의 차별 금지 조항, 1964년 시민권법 제VI 편의 발효 및 동 규정 및 법률의 개정 내용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요건을 준수하여 양도된 토지 및 토지에 대한 이권을 사용하고 (3) 위의 차별금지 조건을 위반할 경우 운송부는 해당 토지 및 토지상 시설에 다시 진입할 권리를 갖고, 위의 토지 및 지상 시설을 미국 운송부 및 그 양수인의 절대적 자산으로 복귀하여 귀속시킨다.

(*반환 조항 및 관련 문구는 제VI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부록 C

해당 없음

활동, 시설, 프로그램에서 획득하고 개량한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조항

보장 조항 7(a)에 따라 (**수령자 직위**)이(가) 기입하는 모든 증서, 라이선스, 임대차 계약, 허가 혹은 증서에 다음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A. (양수자, 라이선스 소지자, 임차인, 피허가자 및 기타 해당하는 자) 본인 및 그 계승자, 개인적 대리인, 이권 승계인, 양수인은 이 문서의 고려 대상의 일부로써 다음을 서약하고 동의한다 [증서 및 임대차 계약의 경우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약정으로서"라는 문구를 삽입한다]:

1. 시설이 운송부 활동, 시설,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목적 혹은 유사한 서비스 및 혜택의 제공을 포함한 다른 목적을 위해서 건설, 유지, 또는 그밖에 (증서, 라이선스, 임대차 계약, 허가 등)에 기술된 형태로 운영될 경우, (양수자, 라이선스 소지자, 임차인, 피허가자 및 기타 해당자)는 어떠한 사람도 인종, 성별, 출신 국가, 연령, 장애 여부, 소득 수준, 혹은 제한적 영어 능력 때문에 언급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혜택을 보는 것을 거부당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법률 및 규정(개정 가능)에 의해 부과된 모두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 해당 시설을 유지, 운영해야 한다.

B. 라이선스, 임대차 계약, 허가 등에 관하여, 위 차별 금지 계약을 하나라도 어겼을 경우 (**수령자 직위**)은(는) (라이선스, 임대차 계약, 허가 등)을 종료하고, 문서에 언급된 토지 및 시설에 진입, 재진입, 다시 소유하고, (라이선스, 임대차 계약, 허가 등)이 성립되거나 발행*되지 않았던 것처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C. 위 차별 금지 계약을 하나라도 어겼을 경우 (**수령자 직위**)은(는) 토지 및 토지상 시설에 진입 및 재진입 할 권리를 가지며, 위에서 언급한 토지 및 시설은 그 즉시 (**수령자 직위**) 및 그 양수인에게 반환 및 귀속되며 그들의 절대적인 자산이 된다.

(*반환 조항 및 관련 문구는 제VI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부록 D

해당 없음

활동, 시설, 프로그램에서 획득하고 개량한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조항

보장 조항 7(b)에 따라 모든 증서, 라이선스, 임대차 계약, 허가, 또는 (**수령자 직위**)이(가) 관여하는 유사한 합의에 다음의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A. (양수자, 라이선스 소지자, 피허가자 및 기타 해당하는 자) 본인 및 그 계승자, 개인적 대리인, 이권 승계인, 양수인은 이 문서의 고려 대상의 일부로써 다음을 서약하고 동의한다 (증서 및 임대차 계약의 경우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약정으로서"라는 문구를 삽입한다): (1) 어떠한 사람도 인종, 성별, 출신 국가, 연령, 장애 여부, 소득 수준, 혹은 제한적 영어 능력 때문에 언급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혜택을 보는 것을 거부당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 (2) 언급한 토지 상에 개량물을 건설하거나 그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어떠한 사람도 인종, 성별, 출신 국가, 연령, 장애 여부, 소득 수준, 혹은 제한적 영어 능력 때문에 언급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혜택을 보는 것을 거부당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 (3) (양수자, 라이선스 소지자, 임차인, 피허가자 및 기타 해당자)는 이 보장에 제시된 법률 및 규정(수시 개정내용 포함)에 따라 부과된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전제한다.
- B. (라이선스, 임대차 계약, 허가 등)에 관하여 위 차별 금지 계약을 하나라도 어겼을 경우 (**수령자 직위**)은(는) (라이선스, 임대차 계약, 허가 등)을 종료하고, 문서에 언급된 토지 및 시설에 진입, 재진입, 다시 소유하고, (라이선스, 임대차 계약, 허가 등)이 성립되거나 발행되지 않았던 것처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C. 증서에 관하여, 위 차별 금지 계약을 하나라도 어겼을 경우 (**수령자 직위**)은(는) 토지 및 토지 상 시설에 진입 및 재진입 할 권리를 가지며, 위에서 언급한 토지 및 시설은 그 즉시 (**수령자 직위**) 및 그 양수인에게 반환 및 귀속되며 그들의 절대적인 자산이 된다.

(*반환 조항 및 관련 문구는 제VI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부록 E

본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계약자는 자신과 양수인 및 이권 승계인(이하 "계약자")을 위해 차별금지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해당 법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차별금지에 관한 근거:

- 시민권법 제VI편(1964) (42 U.S.C. § 2000d *et seq.*, 78 stat.252),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에 근거한 차별 금지); CFR § 21.1 *et seq.*와 C.F.R. § 303에 의해 시행됨;
- 단일 이주 지원과 부동산 획득법 (1970, 42 U.S.C. § 4601), (추방되었거나 연방 혹은 연방 지원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덕분에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금지);
- 연방 지원 고속도로법(1973) (23 U.S.C. § 324 *et seq.*), (성별에 근거한 차별 금지);
- 재활법 제504조(1973), (수시 개정내용 포함, 29 U.S.C. § 794 *et seq.*), (장애에 근거한 차별 금지); 49 CFR 파트 27;
- 연령 차별 금지법(1975), (수시 개정내용 포함, 42 U.S.C. § 6101 *et seq.*), (연령에 근거한 차별 금지) ;
- 공항 및 활주로 개선법(1982), (수시 개정내용 포함, 49 U.S.C. § 471, 섹션 47123), (성별,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에 근거한 차별 금지);
- 시민권 복원법(1987), (102 Stat. 38.), ("... 넓은 적용 범위를 복원하고 교육 헌법 개정안(1972) 제IX편, 복원법 제504조(1973), 연령 차별 금지법(1975), 시민권법(1964) 제VI편의 적용을 명확히 함.");
- 공공단체, 공공 및 민간 수송 체계의 운영, 공공 수용 장소, 특정 시험 기관에 대해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보호법 제II편 및 제III편 (42 U.S.C. §§ 12131 – 12189) - 운송부 규정 49 C.F.R. 파트 37와 38에 의거 시행;
- 연방항공청의 차별 금지 법령 (49 U.S.C. § 47123),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에 근거한 차별 금지);
- 소수인종 및 저소득 인구의 환경적 정의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방 정부의 조치인 행정명령 12898. 소수인종 및 저소득 인구의 환경과 건강에 불균형하게

높은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프로그램, 정책, 활동을 막음으로써 소수 인구에 대한 차별 금지를 보장함;

- 제한된 영어 능력(LEP)을 가진 사람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 행정명령 13166과 그에 따라서 제한된 영어 능력에 근거한 차별을 출신 국가에 대한 차별에 포함시킨 당국 지침. 제VI편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한된 영어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해당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 (70 Fed. Reg. 74087 ~ 74100);
- 교육 헌법 개정안(1972) 제IX편 (수시 개정내용 포함, 20 U.S.C. 1681 *et seq.*), (교육 과정 및 활동에 있어서 성별에 근거한 차별 금지) - 49 CFR § 25.1 *et seq*에 의거 시행함.